

## 이란의 자원에너지 개발 법제 연구

- 석유법과 광산업, 대이란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

박원석 교수  
(중앙대학교)

### 1. 이란의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 동향

#### 2-1. 이란은 세계 최대의 원유/가스 부국

- 이란의 원유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다음으로 세계3위를 차지하고 있고(캐나다의 오일샌드 제외하면 세계 2위), 원유 수출에 있어서는 세계 4위
- 천연가스 매장량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
-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합산하였을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자원 보유국이라고 할 수 있음.

#### 2-2. 원유

- 원유매장량은 1360억 배럴로 전 세계원유매장량의 약 10%를 차지.
- 2007년 기준 27개의 해상광구를 포함하여 약40개 광구에서 원유가 채굴되고 있음.
- 2007년 기준 일 3,8백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였으며, 그 중 2,4백만 배럴을 아시아와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음. 이는 미화 약 550억 달러 수준으로서, 정부수입원의 약 1/3을 차지하고, 전체 수출액 중에서는 85%를 차지하고 있음.
- 1980년 이란혁명 전에는 일 6백만 배럴을 생산하였으나 약 70%정도로 감소한 이유는 8년간의 이란-이라크 전쟁, 투자부진 그리고 경제제재 등으로 판단됨.
- 원유자원 개발은 석유성 산하 이란석유공사(NIOC)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이 중 NIOC 자회사인 NISO(National Iranian South Oil Co.)가 국내 오일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 헌법상 원유광구의 소유권은 민간에게 부여될 수 없으며, 외국기업은 buyback 형태로 이란의 관영 국영기업과 공동투자자로 참여 허용.

### 2-3. 천연가스

- 2009년 기준으로 천연가스매장량은 약991조 입방피트로 러시아에 이어 세계2위 수준임.
- 주요 천연가스광구는 South Pars, North Pars, Tabka, Kangan-Nar이며, 약 2/3가 분산되어 있음.
- 천연가스 수출량은 거의 없음. 이유는 대부분 국내수요로 충당됨. 2007년 기준 천연가스 생산량 및 소비량은 3.9조 입방피트임.
- 천연가스 관련 개발의 담당기관은 석유성 산하의 NIGC(National Iranian Gas Co.)로서 기반시설 확충, 운송, 유통 등도 책임지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의 경제제재 후 렉솔, 쉘, 토탈 등 기존의 유럽계 투자업체들이 추가투자를 주저함에 따라 아시아 기업들에 투자를 요청함. 인도의 Indian Oil Corp.와 중국의 China Petroleum and Chemical Corp. 그리고 러시아의 Gazprom 등이 진출함.
- 대표적인 가스개발프로젝트는 Southpars 프로젝트로서 이란 전체 가스매장량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음. 동 광구는 1990년에 발견되어 20년간 25단계로 개발되고 있고, 현재 10단계까지 진행됨.

## 2. 이란의 광물자원(철광석, 납, 구리, 아연, 알루미늄 등)

### 2-1. 매장 현황

- 이란 광공업성 산하에 이란 광물산업개발혁신기구((Iranian and Mining Industrial Development and Renovation Organization, 이하 IMIDRO)가 2004년 탐사한 바에 따르면 이란에는 약 62가지의 금속 및 비금속 광물자원이 존재하며, 전체 광물의 총 확인 매장량은 27억 톤으로 발표됨
- 2007년 탐사 결과 IMIDRO는 약 54억 톤의 광물매장량이 존재한다고 구두 발표함. 그러나 구체적인 광물종류와 매장량은 비공개함
- 2009년 현재 약 3800개의 광산에서 매년 약 1억5000만 톤의 광물을 채굴하고 있음.

〈 주요 광물 생산량 〉

광물	매장량(톤)	연간생산량(톤)	세계 생산량 순위
금	200	195(kg)	55위
철광석	21억5000만	1800만	16위
구리	1400만	15만2000	16위
납	1억600만	6만8000	16위
아연	1000만	10만9000	23위
알루미늄	미확인	21만2000	25위

출처: Mines & Mining in Iran, IMIDRO(2004년 기준), KOTRA 재인용

2-2. 광물자원 개발계획

- 하마티 대통령 집권기에 추진된 제3차 경제개발계획(2000-4년)에 따라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제시한 Vision 20 Year를 한 방편으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해 Geographical Survey of Iran(GSI)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20개의 주요 광물생산지역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음.
- 동 개발계획에 따라 20년 이내에 연간 약 100만 톤의 구리 및 아연, 5000만 톤의 철광석, 25톤의 금광석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경제개발 기간에는 연간 약 700만톤의 철광석, 5톤의 금광석 생산력을 확보할 목표를 세우고 있음.
- 지난 2006년 7월 2일자 최고지도자령으로 발표된 민영화 계획에 따라, 일부 광산업 관련 기관의 민간 매각을 추진함. 이는 광산업 인프라 구축 및 인적 자원의 능력배양, 외국인 투자촉진, 부족한 자원조달 및 선진기술 도입을 목표로 한 것임.
- 민영화계획은 Oil & Gas 회사(NIOC 등 upstream 관련회사 제외), 은행(중앙은행 등 일부 국책은행 제외), 보험(Central Insurance 등 정책담당 보험회사 제외), 항공 및 선박회사(C.I.O 및 P & S Org. 제외), 우편 및 통신회사(모기업 제외) 등 기간산업을 대상으로 전폭적으로 추진 예정.
- 동 계획은 은 국영기업 주식50-80%를 비정부 기관(non-governmental sectors)에 매각하고, 정부의 경제참여 비율도 65%에서 20%로 축소할 계획을 세움. 민영화 대상기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함.
- 나아가 2009년에는 이란 광공업부 차관 Dr. Masoud Samieinejad는 2010년부터 시행될 제5차 경제개발4개년 계획(2010년 3월-2015년 3월(?)) 기간 중 현재까지 탐사된 전체 광물매장량의 약 500억 톤 중에서 1%에 해당하는 5억 톤(2009년 2억3천만 톤) 가량을 채굴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를 위해 광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이란 국회인 마즐리스의 광공업분과위에서 검토 중임.
- 광업법 개정의 주요 사항은 광산개발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임의대로 광산개발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 이는 광산에 대한 민간투자 허용하고 및 광업사업권 취득을 자유롭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광산업자들이 면허취득 후 실제적으로 착굴작업을 하지 않은 실태를 시정할 목적으로 채택됨.
- 이란 광공업부는 2009년 현재 약 380개 광산개발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계획임.
- 그러나 미국 및 UN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자금조달의 난관,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 정서, 외국인투자의 불안전성 등으로 여전히 투자매력도가 전체 183개 국가 중 137위임(2009년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Doing Business 2010, Iran)

### 3. 석유법

#### 3-1. 정의조항

- 석유자원(petroleum resources), 석유사업(petroleum operation), 사업단위(operational units), 계약(contracts)에 대한 정의 규정
- 석유자원은 내수, 영해, 해안, 국제수로 및 대륙붕 등 석유매장이 가능하고 발견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기술적 그리고 지리적 특성은 석유부(Ministry of Oil)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
- 석유사업은 석유자원의 보존, 보호 및 채굴과 관련이 있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 이에에는 연구조사(research survey), 측지학(지구의 크기나 형태를 수학적으로 측정, 연구하는 것, geodesy), 지적학적 연구, 탐사, drilling, 운영, 채굴 및 생산, 자원부지의 구매, 시설 또는 산업의 설치를 위한 투자프로젝트의 준비 및 실행, 그리고 이의 확장 및 레너베이션; 석유산업과 관계가 기관의 보호 및 보장, 석유원유와 가스의 생산 및 가공활동, 원유 정유 및 석유파생품의 생산, 석유화학품의 생산을 위한 석유 및 가스 파생물의 이용; 석유 및 가스 그리고 석유화학품의 수송, 분배, 판매, 그리고 수출행위; 석유 및 가스 그리고 석유화학품의 수출, 수입, 행위, 생산과 관련이 있는 상업적 활동; 작업장 훈련; 관련 환경 및 안전 활동 등 석유생산과 관련이 있는 모든 분야가 포함.

- 석유사업의 범위가 이란 정부의 다른 조직이나 기관의 정당한 의무, 계획 그리고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경우 석유부가 준비하고 의회의 승인을 취득한 부령을 통해 필요한 결정이 채택될 수 있다.

### 3-2. 석유자원 및 부대 시설 및 장비의 국가귀속성

- 모든 석유자원, 시설, 장비, 자산, 및 석유부와 그 자회사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행한 투자금은 모두 이란 정부에 귀속된다. 동 법상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석유부가 수행한다.(제2조)

### 3-3. 석유부의 권한

- 동 법상의 모든 권리와 권한의 행사는 석유부와 자회사에 위임되고, 석유사업과 기타 의무 및 기능에 대한 감독권은 석유부에 위임됨.(제3조)
- 석유부의 석유사업 수행 및 탐사를 위한 회사 설립권. 국영 석유, 가스, 및 생화학기업의 정관 작성 의무(제4조)
- 석유부 또는 석유사업기업과 국내 그리고 외국인 또는 기업과의 계약체결은 석유부의 제안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정관(by-laws)이 적용.(제5조)
- 모든 자금투자는 운영기관의 예산에 의거하여 석유부를 통해 제안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일반국가회계에 포함된다.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
- 석유부는 석유사업, 석유매장의 보호, 시설, 환경오염예방에 대한 감독기관임.(제7조)
- 석유부의 인력자원 채원, 훈련, 첨단기술 접근 의무(제10조)

### 3-4. 자본투자 적용법률 및 소유권 양도 제한

- 모든 고정자본금은 관련기관의 법이나 규정에 따르고, 적용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이란의 일반 규정이 적용.
- 석유사업기관의 처분 및 통제하에 두어지는 자본투자는 동 기관의 재산으로 간주되고, 그 소유권 양도는 석유부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짐.(제8조)

### 3-5. 보안기관의 설치 및 운영

- 석유자원과 시설, 석유산업의 재산 및 서류의 보호와 안전한 보관을 위해 석유부는 내무부의 공조아래 석유산업보안청(Oil Industry Guard) 내에 보안기관(하라사트, Harasat)을 설치.

- 관련법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석유부와 내무부가 작성한다.(제9조) 동 기관의 설치비용은 석유산업보안청의 예산으로 충당.

### 3-6. 석유사업 관련 권리의 취득방법

- 석유사업에 필요한 부지, 건물, 물, 지역권(easements)은 의회가 승인한 석유, 가스, 석유화학회사의 정관(Statutes of the National Iranian Oil and Gas and Petrochemical Companies)에 따라 취득(제11조)

### 3-7. 무효조항

- 동 법에 반하는 모든 법률 및 규정은 무효이다.(제12조)

## 4. 이란 광업법

### 4-1. 채택배경

- 이란의 광업법은 이란 헌법 제44조와 제45조와 그리고 국가의 광업권의 소유권을 광공업부(Ministry of Mines and Metals)에 부여한 신법 제2조에 따라 의회(Majlis)1998년 5월 16일 제정됨.
- 동 법은 36개 조항과 네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정의조항, 탐사 및 채굴 조항, 광업에 관한 일반조항 등을 수록하고 있다.
- 목적 : 광업법의 흠결 제거, 광업 분야에서의 탐사 및 채굴의 확대, 천연자원의 개발 및 가송, 공장으로서의 원료 공급, 외국산 원료 및 미완성 재료의 국내부품으로의 교체, 민관분야 참여를 위한 장벽 제거, 공공참여 보장을 위해 제정됨.

### 4-2. 광물자원의 소유권을 국가(광공업부) 귀속

- 광업매장량(mining reserves)의 보호
- 광업사업권의 발급(issuing permits for mining operations)
- 광산업의 감독
- 광산활동의 부지 준비
- 광물원료의 부가가치 제고

- 광산업 분야 고용 확대
- 경제 및 사회 개발에 있어 광산업의 역할 증대

#### 4-3. 주요 조항

- 발견매장량에 대한 담보권 인정(제10조, 주석 2)
- 공식문서 또는 소유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탐사허가증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여 탐사기간을 6년에서 35년으로 연장(제10조, 주석 2)
- 수출용 광물자원의 채굴 및 가공활동에 대한 광공업부의 지원(제16조와 제17조)
- 광업전문가 및 지질학자를 위한 서비스의 조직 및 최적 활용(제27조)
- 광물자원의 경제적 생산을 계산하는데 있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물 생산에 대한 불필요한 고정비용 규제의 제거(제29조)
- 탐사업자와 채굴업자의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광물활동 투자펀드의 조성
- 광물매장량의 훼손 및 낭비 예방(제34조)

### 5.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 5-1. UN안전보장이사회 경제제재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안보리결의안은 1696, 1737, 1747, 1803, 1835, 그리고 1929 등이 있으나 제재조치는 다음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 UN 안보리결의안 1737(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이 결의안은 우라늄 농축 중지 요청한 결의안 1696을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하여 2006년 12월 23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이 결의안을 지원하였다. 동 결의안은 핵 관련 기술 및 원료의 공급을 금지하였고,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핵심 인물과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였다. 동 결의안은 채택되기 두달 전에 마련되었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수 차례 수정되었다. 당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채택 직전 전화를 하여 투표를 중지하도록 요청하였다. 동 결의안은 이란이 핵 농축 프로그램 중지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제시한 것을 거부한 이후 채택되었다. 경제제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만족할 정도로 60일 이내에 의심스러운 활동을 중지하면 해제된다.

## - UN안보리결의안 1747:

이 결의안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2007년 3월 24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006년 6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상임안전보장이사회 국가와 독일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영구히 중지하는 경우 민간 핵 분야에 대한 기술이전을 포함한 경제적 혜택을 패키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핵 농축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거절하였다. 이란이 제시한 변명은 서방국가들과 북한 그리고 리비아 사이에 체결된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동 결의안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무기판매의 금지 및 기존의 자산동결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의하였다.

## - UN 안보리결의안 1803:

이 결의안은 2008년 3월 3일 인도네시아가 기권하여 14-0으로 채택되었다. 안보리는 UN헌장 제7부 제41조에 따라 이란의 모든 우라늄 농축행위를 중지할 것과 플루토늄 원심 분리 및 우라늄 농축 관련 연구 및 개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란은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라늄 농축행위는 IAEA의 기준과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고 국가의 주권적 사항이라며 거절하였다.

## - UN 안보리결의안 1929:

이 결의안은 이란이 기존의 안보리결의안 1696, 1737, 1747, 1803, 1835, 그리고 1929을 위반한 것을 상기하며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그러나 브라질과 터키의 반대와 레바논의 기권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안보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였다:

-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 참가 금지
- 모든 국가들에게 이란에 대한 군수차량, 항공기, 군함, 미사일 및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관련 원료의 공급 금지
- 무기 및 무기 관련 교육, 자금조달 및 지원 금지, 그리고 무기 및 관련 원료의 판매 제한;
- 결의안 부속서에 수록된 개인에 대한 여행 금지. 단 결의안 1737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허락하는 경우 제외.
- 이슬람 혁명군과 이란 국영선박회사(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의 자금 및 자산 동결



나아가 모든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 금지품목에 대한 국제해양법과 민간항공협정에 따라 이란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의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보고할 것;
- 금지품목의 압수 및 처분;
- 이란 선박이 금지활동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 연료, 부품 그리고 서비스 예방;
- 이란의 항공기나 선박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있는 경우 위원회와 다른 회사에 정보를 제공할 것;
- 핵 활동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제공 예방;
- 이란의 핵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이란인이나 기관과 거래를 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 요망;
- 이란의 핵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의심이 있는 경우, 영토 내에서의 이란은행 개설 금지와 자국 은행들이 이란은행과의 관계 체결하는 것의 금지;
- 자국 내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이 이란의 핵 확산에 기여하는 경우 이란에서의 사무소와 은행구좌 개설 금지.

그러나 위 조치들은 인도적 목적이나 정당한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는 예외를 부여하고 있다.

## 5-2. 미국의 대이란 제재

1979년 이란 혁명군의 미국 시민 인질사건 후 미국은 약 120억 달러 상당의 이란 소유 은행 예금과 금 그리고 기타 재산을 동결하였다. 이라크의 이란 침공 후에는 이란에 대한 무기판매와 금지하였다. 미국은 또한 국제금융기관의 이란에 대한 모든 대출에 대해 반대하였다. 1987년 이후 이란과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 5-2-1. 이란-리비아제재법(Iran-Libya Sanctions Act, 이하 ILSA)

일명 '다마토법'으로 불리는 ILSA는 미 공화당 상원의원인 알폰스 다마토(Alfonse D'Amato)의원의 발의로 1996년 8월에 제정되어, 발효된 법안으로서 이란과 리비아의 에너지산업에 연간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국적에 관계 없이 미국 정부가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동 법은 추가적인 연장을 위한 일몰조항(sunset clause)에 따라 2001년 연장되었고, 2006년 효력이 만료되었다가 우여

곡절 끝에 2006년 9월 이란제재법(Iran Sanctions Act, 이하 ISA)으로 개명되어 2011년 12월 31년까지 연장되었다. 2008년 3월까지 미국 기업외 다른 국가에 기업에 대해 ISA조치가 취해진 바 없다.

대상 기업은 다음의 7개 제재조치 중 최소한 2개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미국 수출입은행 접근 금지;

제재대상 외국기업에 대해 시기를 불문하고 12개월에 걸쳐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1천만 달러 이상의 대출, 차관, 신용보증 거부;

대상기업으로의 수출금지;

대상기업으로부터의 대미 수입금지;

대상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금지;

대상금융기관과의 미정부 국채의 우선적 달러 및 정부기금의 리포지터로서의 서비스 금지;

수출입은행의 대출거부 등이다.

이 법은 미국 내의 주요 에너지기업들도 완화를 요구할 만큼 엄격하다. 1997년 7월 프랑스 Total사 및 이의 합작파트너인 러시아 GAZprom, 말레이시아 Petronas 등이 이란과 South Pars 지역의 가스전 개발을 위한 20억 달러 투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법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결국 1998년 5월 미국-EU간 정상회담에서 동 프로젝트에 대한 ILSA의 적용을 해제하였다.

#### 5-2-2. 포괄적 이란제재법

포괄적 이란제재법((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 이하 CISADA)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기존 1996 이란제재법(ISA)의 강화 및 확대  
2006 이란제재법에서 제재의 대상이 되는 7개 제재조치 외에 미국 내 외환시장 접근 금지; 미국 은행 시스템 접근 금지;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 등 3개 조항이 추가적으로 금지됨.
- 이란의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거나 정유제품 및 정제기술을 공급하는 기업 등에 대한 미국시장 참여 제한  
2006 이란제재법의 제재대상 이외에,

## I. 이란의 자원에너지 개발 법제 연구 211

- “실제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with actual knowledge)” 이란 소재 정제유 생산에 관련한 상품·서비스·기술·정보 등을 판매, 임대, 공급한 업체;
- 이란으로 정제유를 수출하거나 이란의 정제유 수입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상품·서비스·기술·정보 등을 판매, 임대, 공급한 업체를 포함.
- 석유자원 개발 투자금액 기준: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 능력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기여한 2000만 달러이상의 투자를 한 자(자연인, 기업 또는 정부기관 포함).

이 때의 투자금액은 12개월 동안 최소한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금액이 합산하여 200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도 포함한다. 현행법상 제재의 기준은 각각 일회성 투자금액 4000만 달러, 최소투자금액 1000만 달러, 그리고 12개월 총 누적투자금액 4000만 달러이었던 것을 더욱 강화. (CISADA 제102조)<sup>1)</sup>

- 정유제품 관련 거래금액 기준  
“실제로 인지한 상태에서” 이란의 정유제품(refined petroleum products) 생산과 관련이 있는 상품·서비스·기술·정보 등을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provide support)을 한 자로서: (1) 그 시장가치가 20만불 이상; 또는 12개월 동안 총 누적 시장가치가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sup>2)</sup>
- 정유제품 무상 공급자; 관련 기술 또는 서비스의 판매자 또는 제공자 기준  
“실제로 인지한 상태에서”  
(1) 20만 달러 이상의 시장가치를 가진 정유제품(refined petroleum products)을 이란에 **공급**한 자, 또는 12 개월 동안 총 누적 시장가치가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sup>3)</sup>, 또는

1) if a person(defined by such Act to include a natural person, business enterprise, or government entity operating as a business enterprise) has, **with actual knowledge**, made an **investment** of \$20 mill. or more, or any combination of investments of at least \$5 mill. which in the aggregate equals or exceeds \$20 million in any 12-month period, that **directly and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Iran’s **ability to develop petroleum resources**.

2) on a person who has, with actual knowledge, **sells, or provides** goods, services, technology, information, or provides support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refined petroleum products in Iran: (1) any of which has a **fair market value of \$200,000** or more; or (2) that during a 12-month period have an **aggregate fair market value of \$1 million** or more.

3) 즉 판매를 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A person that, with actual knowledge: (1) **provides Iran with refined petroleum products** that have a fair market value of \$200,000 or more, or that, during a 12 month period, have an aggregate fair market value

(2) 20만 달러 이상의 시장가치를 가진 특정(certain) 상품·서비스·기술·정보 등을 이란에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또는 12개월 동안 총 누적 시장가치가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sup>4)</sup>

- 위 정유제품 생산 및 수출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내용:

외환시장 접근금지(foreign exchange), 은행 시스템 접근 금지(banking), 그리고 자산거래 금지(property).

- 적용대상 기관의 확대:

금융기관, 보험사(insurer, underwriter), 채무보증인(guarantor), 기타 모든 기업(외국인 자회사, 모회사, 또는 affiliate, 수출신용기관으로서의 정부기관 포함).

- 석유자원의 정의 확대:

석유자원(petroleum resources)은 “석유, 정유제품, oil or liquefied 천연가스, 천연가스 자원, oil or liquefied 천연가스 탱커, 그리고 석유 또는 liquefied 천연가스를 수송하는데 사용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 또는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들을 포함한다.<sup>5)</sup>

- 정유제품의 정의 확대:

"정유제품(refined petroleum products)"은 디젤, 개솔린, 항공기 연료(나프타 타입과 케로신 타입 항공연료 포함), 그리고 항공기 개솔린을 포함한다.<sup>6)</sup>

- 이란에 대한 추가적 경제제재 확대:

미국으로의 수출 금지(정보자료 제외); 이란으로의 수출 금지(인도적 지원, 농산품, 식량, 약품, 민간항공기용 또는 IAEA용 상품 또는 서비스, 그리고 민주화 촉진용은 제외); 특정 개인의 자산 동결; 정부 조달계약 금지.(제103조)

---

of \$1 million or more;

4) A person that, with actual knowledge: (1) **sells or provides** to Iran certain goods, services, technology, information, **or support** any of which has a fair market value of \$200,000 or more, or that during a 12-month period have an aggregate fair market value of \$1 million or more.

5) "Petroleum resources" includes "petroleum, refined petroleum products, oil or liquefied natural gas, natural gas resources, oil or liquefied natural gas **tankers**, and **products used to construct or maintain pipelines used to transport oil or liquefied natural gas**."

6) Refined petroleum products means diesel, gasoline, jet fuel(including naphtha-type and kerosene-type jet fuel), and aviation gasoline.

- 의회 보고의무:

제102조 관련 제재의 내용 및 대응에 대해 동 법 발효 후 1년 이내 그리고 이후 180일 마다 의회 보고 의무

- 이란 직접투자기업의 투자이탈 조치(Divestment)

에너지분야란 석유 또는 천연가스자원 또는 원자력을 개발하는 활동을 의미.

이 때의 기업에는 자연인, 법인, 회사, 기업연합, 조합, 신탁, 모든 비정부 기관, 기구, 그룹, 모든 정부 기관; 그리고 위에 언급된 모든 양수인, 하부조직, 모회사, 자회사를 포함함.

- 환적, 재수출, 우회수출 통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제3국을 통한 대이란 환적, 재수출, 우회수출 통제 강화

환적, 재수출, 또는 우회수출이란, 1개 이상의 제3국을 통한 선적이나 허위 원산지 정보를 이용하여, 미국산 물품을 최종소비자의 신분이 확인될 수 없는 자에게 수출하거나, 또는 미국법률을 위반하며 이란 소재 기관에 수출하는 것을 의미.

## 6. 파급효과

### 6-1. 금융부분

- 미국 수출입은행 접근 금지; 제재대상 외국기업에 대해 시기를 불문하고 12개월에 걸쳐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1천만 달러 이상의 대출, 차관, 신용보증 금지; 대상기업으로의 수출금지; 대상기업으로부터의 대미 수입금지; 대상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금지; 대상금융기관과의 미정부 국채의 우선적 달러 및 정부기금의 리포지터로서의 서비스 금지; 수출입은행의 대출거부 외에 미국 내 외환시장 접근 금지; 미국 은행 시스템 접근 금지;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 등 3개 조항이 추가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금융부분에 제1차적 충격이 발생함.
- 국내외 은행들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대이란 금융거래 중단, 수출입 관련 금융거래 서비스 중단, 금융회사 및 이란 기업과의 대금 결제 및 외국환 업무 중단으로 이란과 교역하는 많은 기업에 사실상 거래 중단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
- 이란 소재 정제유 생산에 관련한 상품·서비스·기술·정보 등을 판매, 임대, 공급한 업체뿐만 아니라 이란으로 정제유를 수출하거나 이란의 정제유

- 수입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상품·서비스·기술·정보 등을 판매, 임대, 공급한 업체를 포함하고 있어 에너지 및 석유화학 부분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 석유자원 개발 일회성 투자금액 4000만 달러, 최소투자금액 1000만 달러, 그리고 12개월 총 누적투자금액 4000만 달러이었던 것을 2000만 달러이상의 투자를 한 자 또는 12개월 동안 1회적으로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금액이 합산하여 200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도 포함하여, 각 중 투자펀드회사들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임.
  - 이란의 정유제품(refined petroleum products) 생산과 관련이 있는 20만불 이상 또는 12개월 동안 총 누적 시장가치가 100만 달러 이상의 상품·서비스·기술·정보 등을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provide support)한 경우도 포함하여 소액 거래를 하는 중소 부품회사에도 사실상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함.
  - 20만 달러 이상의 시장가치를 가진 정유제품(refined petroleum products)을 이란에 공급한 자, 또는 12개월 동안 총 누적 시장가치가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판매가 아니라 공급한 자도 제재대상에 포함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도 처벌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정유제품 관련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나 기관 그리고 단체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음. 인도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입증의 책임을 부담함.
  - 석유자원의 정의를 “석유, 정유제품, oil or liquefied 천연가스, 천연가스 자원, oil or liquefied 천연가스 탱커, 그리고 석유 또는 liquefied 천연가스를 수송하는데 사용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 또는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들로 확대하여 건설뿐만 아니라 금속회사와 같은 “부품소재 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임.
  - 정유제품의 정의도 디젤, 개솔린, jet 연료(나프타 타입과 케로신 타입 항공 연료 포함), 그리고 항공기 개솔린을 포함하여 모든 정유회사에 영향을 줌.
  -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대상에 정보자료, 인도적 지원, 농산품, 식량, 약품, 민간항공기용 또는 IAEA용 상품 또는 서비스, 그리고 민주화 촉진용은 제외하고 있으나 상당한 주의를 요망함.
  - 환적, 재수출, 또는 우회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미국산 물품을 재료나 부품으로 사용하여 완성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완성품 수입업자의 최종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거래과정에 불편한 관계를 유발할 수 있음. 특히 이란과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디아, 그리고 중동국가와 거래하는 기업은 상당한 주의를 요망함.